

거제 반도유보라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238-2번지 일원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 지상20층, 4개동 총 292세대
[특별공급 118세대 중 기관추천 22세대 예정]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면적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084.4086A	84A	84.4086	25.5606	109.9692	148	15	15	29	4	10	73	75
	084.8494B	84B	84.8494	25.8207	110.6701	76	7	8	15	2	5	37	39
	109.8024	109	109.8024	32.3291	142.1315	68	-	6	-	2	-	8	60
	공급세대합계					292	22	29	44	8	15	118	174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84A	4	2	4	2	3	1	4	2	15	7
84B	2	1	2	1	1	1	2	1	7	4
합계	6	3	6	3	4	2	6	3	22	11

- ※ 상기내역은 분양승인 시 거제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배정량의 140% 선정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2021. 8. 26 (목)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http://www.gj-ubora.com)
• 견본주택 개관(예정)일	2020. 8. 27 (금) (예정)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2로 12(아주동)
•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1. 9. 6 (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2021. 9. 14 (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계약기간(예정)	2021. 09. 27(월) ~ 09.29(수)	3일간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बैं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선정방법

구분	내용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구분	내용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90 1016 1401 1279">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거제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거제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거제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은 신 무주택세대구성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추천기관 <table border="1" data-bbox="290 1453 1401 1821"> <thead>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등</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경남도청 장애인 복지과</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td> </tr> <tr> <td>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남도청 장애인 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남도청 장애인 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p><u>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u></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입주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u>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 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u>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u>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u></p>
--	---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예비입주자 포함)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당첨자 발표는 일반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접수(서류제출 없음). 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신청 (10:00~14:00), 현장 접수 시에는 자격증명 서류 제출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당첨 시 특별공급을 당첨으로 간주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 신청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가구 수 및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확정하고 특별공급 접수일 전에 동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한국부동산원에 통지 • <u>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하여야 당첨자로 확정</u> •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 예비 지위는 무효 - 특별공급 예비를 포기하고 일반예비 선택불가 - 다만, 특별공급 예비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8.26.(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거제 반도유보라 홈페이지(http://www.gj-ubora.com)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